

본 지침은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7판 -

2020. 3. 10.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 코로나19(COVID-19) 개요	1
1. 법적 근거	1
2. 임상적 특성	1
3. 진단	1
4. 치료	2
5. 예방	2
6. 콜센터 안내	3
II . 대응 방안	4
1. 목적	4
2. 기본방향	4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5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5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6
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9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10
4. 추가 안내 사항	11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11
나. 유연근무제 활용	12
다.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3
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14

<참고·붙임 목록>

참고1)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16
참고2)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30
참고3)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	31
참고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32
참고5) 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34
참고6)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35
부록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0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1
부록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문	42
참고7)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43
붙임1) 코로나19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44
붙임2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48
붙임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질병관리본부)	50
붙임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판)	69
붙임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2-1판) ...	74
부록1)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81

1 법적 근거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2 임상적 특성

- 증상: 발열(37.5°C 이상),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 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 감염이 나타남
 -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잠복기: 1~14일(평균 4~7일)
- 전파경로: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치명률: 1~2%로 알려져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3 진 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4 치료

- 현재까지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실시

5 예방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
 - * 당뇨병, 심부전, 만성 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기
 - *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4일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 해외,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하기
-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 상담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하지 않기

6 콜센터 안내

○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주요 상담 기능: 질병정보,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20개국어)

- 주요 상담 기능: 외국인 행정 및 생활 종합안내*

* 주요 감염병 상담 및 조치사항 안내,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법정감염병 예방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이용시간	언어
09:00~22:00	한국어, 중국어, 영어
09:00~18:00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라어

1 목 적

- 본 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2 기본 방향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사내 협력업체 포함)을 수립한다.

-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비치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포함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등 감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정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코로나19의 심각 단계 행동 수칙 (붙임 1)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 소독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을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2-1판) (붙임5) 참조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방과 주변가구를 청결히 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지침

- (착용시) ①착용 전 손을 깨끗이, ②입과 코 완전히 가릴 것, ③수건 휴지 닦대지 말 것, ④착용 동안 손으로 만지지 말 것
- (일반적 원칙) ①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②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③감염우려가 낮은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됨, ④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KF94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②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 감염·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④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예) 대중교통 운전자,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3.3 식약처 ‘마스크 사용 지침(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일부 발췌]

◆ 방진마스크는 석면, 베릴륨, 용접 흠 등 유해인자에 대해 노출되는 분진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배기밸브가 있는 방진마스크를 환자가 착용하면 밸브를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음.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건용 마스크 대신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붙임2 참고)

○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등 유의사항 준수,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

* 중국의 경우 여행경보제도에 의해 후베이성은 3단계(철수권고: 긴급용무 아닌 한 철수·여행취소), 후베이성 제외 중국지역은 2단계(여행자제: 신변 안전 특별유의·여행 신중검토)의 여행경보 발령('20.1.28 기준)

**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이탈리아(북부지역), 이란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여행 삼가('20.3.5 기준)

- 해외에서 입국 하는 노동자는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 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특히,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특히,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등
- 의료기관*, 항공사, 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 * 청소, 세탁, 돌봄서비스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설치수리기사 등 포함
-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세정제(알코올 세정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 배송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으로 배송·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다. 사업장 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환자, 확진 환자 발견 시

◆ 의사환자

- ①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C)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사업장에서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환자, 확진 환자 발견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이때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보건소 담당자 도착 전, 해당 노동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환자, 확진 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으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 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를 말함.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포함

- 사업주는 확진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극 협조한다.
- 확진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붙임5)”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 후 사용 재개는 같은 지침에 따라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시설 사용 재개 시점은 소독제별로 특성이 달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지침 부록 P81 참고)

-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작업장, 휴게실, 식당, 고객·방문자 등이 방문한 장소 등 사업장 내 모든 장소를 말함.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체점검표(참고4)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4 추가 안내 사항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20.2.17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②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나. 유연근무제 활용

◆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집접촉 등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

* 예시) 10시 출근/19시 퇴근, 8시 출근/17시 퇴근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가급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점심시간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한다.

* 예시) 부서별로 달리 운영(A부: 11:30~12:30, B부: 12:30~13:30)

- 다만,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변경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 시간, 인원을 분배하여 운영한다.

구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수준	주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 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다.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청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6조의3 제2항에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
 -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 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①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u> ②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u> ④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u>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5일 지원(한부모 근로자 최대10일)
지원 수준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 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전산시스템 구축 중)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연차사용 여부와는 무관하며,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 필요

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유예 (2020.02.28. 시행)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한다.
- 다만,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업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 유예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 유예 해제된 날부터 6개월까지 실시
-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이 유예된 경우라도 노동자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이 경우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협의한 경우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출장검진 전에 검진장소를 소독하고 검진 실시

- 7개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 및 해당 노동자가 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완치된 후 특검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사업주·노동자로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을 요청받은 특수 건강진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

* 특수건강진단기관 직원의 확진·의사환자 발생, 코로나19 인력지원으로 정상적인 건강진단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휴업 휴가 관련>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확진자의 방문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코로나19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 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Q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를 돌보거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을 5일 이내 기간(맞벌이 각 5일, 한부모 근로자 10일)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Q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Q3.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Q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3.16.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Q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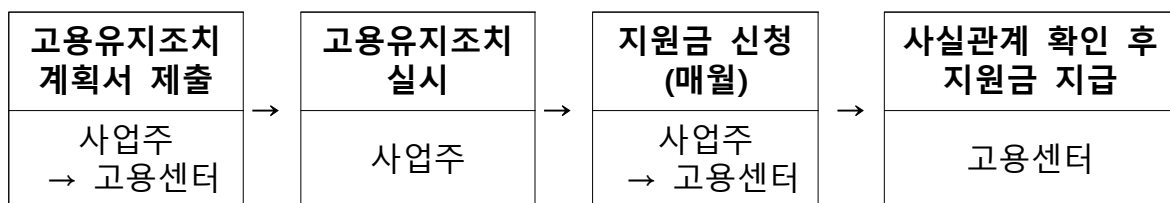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 따라서 외벌이 노동자는 5일, 맞벌이 노동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 특히 한부모 노동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Q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Q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20.3.1.시행)에 따라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

* 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 180일)과 1일 지원금액 상한액(1일 66,000원)은 동일합니다.

Q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Q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 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Q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Q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Q7.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른
어떻게 하나요?**

-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
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 (예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

→ 기준근로시간 = 현재 피보험자 수(12명) × 40시간 = 480시간

Q8.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Q9.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Q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한다는 것은?

- 유예 기간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유예가 해제되면 유예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단, 7개 유해인자* 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더라도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Q2. 폐기능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7개 유해인자에도 노출되는 경우는?

- 7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은 실시해야하고 그 외 폐기능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유예대상이 됩니다.

Q3. 7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유예되는 건강진단은?

- 7개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그리고 이후 특수건강진단 모두 해당됩니다.

Q4.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방문한 노동자가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발열 등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유예 안내하고 해당 노동자의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U(재판정)’로 판정하시고

※ 건강진단 접수 전에 발열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한 경우로 U판정 할 수 없을 때에는 노동자 방문일시, 노동자명(성별·나이), 유예사유, 사업장명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사업장 등 요청시 제공

-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증 의료기관 안내사항’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코로나19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 ‘의료기관’ 검색)

<외국인 근로자>

Q1.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국적을 가진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3개국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로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상이 됩니다.

Q2.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신청서(EPS홈페이지 신청가능)를 제출할 때 연장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방문은 자제)
- 신청 전에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와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Q3.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 시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법무부로부터 연장처리 결과를 받고 우리부에서 근로계약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 및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처 리 절 차) ①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시 체류기간 연장 가능 안내 (지방관서)
②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명단을 인력공단 통보(본부→인력공단)
③ 희망 사업장 수요 파악 후 법무부 연장 요청(인력공단→본부→법무부)
④ 연장결과 회신(법무부→본부) ⑤ 연장기간 전산입력(한고원) 후 지방관서에 명단 통보(본부→지방관서) ⑥ 사업장 안내(지방관서→사업장)

Q5. 코로나 19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고용허가신청 등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는 EPS홈페이지(www.eps.gp.kr), 관할센터 유선전화·팩스등으로 가능합니다.

- EPS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신청가능 업무*는 EPS홈페이지를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 방문신청 필요업무*는 필수 방문상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FAX, 유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사업장 정보변동신고(고용승계, 지사간이동), <근로자> 사업장 변경신청, 방문취업 외국인 구직등록, 출국예정신고

Q6.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등 체류지원을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로 연락하시면,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과 관할 선별진료소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팀에서도 통역원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외국인력상담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

연번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1	외국인력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1577-0071
2	한국센터	서울 구로구	02-6900-8000
3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031-838-9111
4	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055-338-2727
5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055-253-5270
6	인천센터	인천 남동구	032-431-4545
7	대구센터	대구 달성군	053-654-9700
8	천안센터	충남 천안시	041-411-7000
9	광주센터	광주 광산구	062-946-1199
10	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055-912-0255

참고2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1판) 에서 발췌

분류	정의	조치사항	접촉자 관리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입원치료 또는 격리 (자가격리, 생활치료센터)	○ 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 (양성) 확진환자로 분류하여 조치 - (음성) 증상발현일 또는 입국일 이후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C)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자		

참고3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사업장 조치전까지 대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사업장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C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등),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 및 **사용 재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참고 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업종 및 주요생산품목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남/여)	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자체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대 비 · 대 응 계 획	1) 사업장 내 감염대비·대응 계획 수립 여부 [필수사항]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관리 대책(협력업체 파견·용역업체 포함)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대비 관리대책 등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조정, 재택근무 등	☐ 수립 ☒ 미수립 *필수사항 포함 되어야 수립 인정	
	2)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여부	☐ 전담부서 지정 ☐ 전담자 지정 ☒ 미지정	
사 업 장 위 생 관 리	1)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관리 여부 * 중점 관리 시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다수 이용 시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	☐ 예 ☒ 아니오	
	2)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구비 여부	☐ 예 ☒ 아니오	
	3)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여부 *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비치	☐ 예 ☒ 아니오	
개 인 위 생 관 리	1)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손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요령 등 노동자 교육 실시 여부 *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포함	☐ 예 ☒ 아니오	
	2)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한 개인 위생 실천방안(손씻기, 기침 예절 등) 안내 여부 * 사업장, 영업소 등 홍보 안내문 이나 포스터 부착여부 등	☐ 예 ☒ 아니오	
	3) (고객응대노동자가 있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노동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 의료기관(응역, 돌봄서비스종사자 포함), 항공사, 마트 및 운수업 등	☐ 예 ☒ 아니오 ☐ 미해당	

항목		자체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감염유입 · 확산방지	1)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업장 내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 미해당	
	2)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소속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	☐ 있음→ 2-1)로 ☐ 없음	
	2-1)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있다면)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3)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소속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	☐ 있음→ 3-1),2)로 ☐ 없음	
	3-1)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있다면)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3-2)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있다면) 입국 후 14일째 되는날 까지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하여 외부활동을 자제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기타	1)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소속 근로자나 방문고객 포함), 조사대상유증상자가 발생 또는 사업장 방문 여부	☒ 있음 ☐ 없음	

※ (미이행 사유 작성) 대응·대비계획은 “미수립, 미지정”의 경우, 사업장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는 “아니오”의 경우
(후속조치내용 작성) 감염유입·확산방지·기타는 “아니오” 또는 “있음”의 경우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2020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참고5

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번호	지침명	관련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2판)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2-1판)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판)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7-1판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7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부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	교육부
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10	「코로나19(COVID-19)」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1차)-외부기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11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	산업통상자원부
12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6판 (영문판)	고용노동부
13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6판 (중국어판)	고용노동부

참고 6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1판) 에서 발췌

※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①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진단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조치사항)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입원치료 또는 격리 (자가격리, 생활치료센터)

- 확진환자의 자가격리는 「자가격리환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3)」을 준수하여 자가모니터링 실시

구분	조건
입원	-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호흡수 및 고위험군 등 바탕으로 중증도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 치료 센터	- 입원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 및 중증도 분류에 따라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가 격리	- 환자의 건강상태가 퇴원기준에 합당하며 자가격리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 경우 - 독립된 공간(독립된 침실, 화장실, 세면대 등)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경우 - 식료품 등 생필품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경우 - 고위험군과 동거하지 않을 경우

②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치사항)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자가격리 및 진단 검사
 - 의사환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1)」,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2)」을 준수하여 자가모니터링 실시
 - * 경증이지만 자택 내 자가격리 불가(독립된 공간 확보 또는 추가적인 보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장소(시설 및 병원격리) 제공, 환자분류상 중등증 이상인 환자, 고위험군은 병원격리

③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

- (조치사항) 진단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양성) 확진환자 조치
 - (검사결과: 음성)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증상 악화시에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문의

◆ **보건교육**

-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출, 타인과의 접촉(식사포함),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 (해야 할 일)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환자와 접촉유무알리기, 국내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2.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관리

< 증상발생 전 >		< 증상발생 후 >	
확진환자의 접촉자	(보건소) 자가격리(14일)	→ 증상 발생	- 의사환자로 분류 및 검사 - 자가격리 지속

- (조사)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 14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하여 보건소에서 조사

◆ **접촉자 범위 예시(WHO 2.27일자 기준)**

- 확진환자와 적절한 보호구를 하지 않고 직접 진료하거나 돌본 사람
 - 확진환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밀접하게 머무른 사람(가족, 직장, 교실, 모임 등)
 - 확진환자가 증상발생 후 14일내에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였고 확진환자와 근접한거리(2미터*)에 있었던 사람
- * 단, WHO근접거리는 1미터임

- (관리사항) 확진환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실시
- 접촉자 중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 실시

3. 격리해제 조치

①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가능하며,
 - 이 경우의 격리해제는 ①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 원칙 또는 ②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 해제*
 - * 고위험군의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②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다음의 검사기준 충족되면 격리 해제
 - ①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②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또는 ③무증상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 해제
 - ※ 잠복기 14일 이전에 격리해제 된 경우 환자에게 주의사항 안내, 증상이 악화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안내
- (확진환자의 접촉자)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
 -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음성으로 확인되어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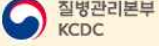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2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16일 00시 해제(이동가능)

③ 의사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즉, 퇴원하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부록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질병관리본부
KCDC

2020.2.28.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부록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문



질병관리본부
KCDC

2020.3.2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03시부터 04시까지 30분간격 격리를 점검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자가치료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모니터링 방법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서식6)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권태감

☑ 인후통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폐렴

□ 감염병 예방법

<참고>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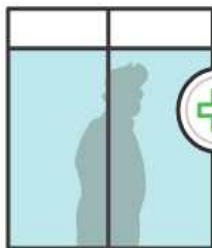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 마스크 착용법

발행일 :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쳐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산업현장은 산업용, 일반국민은 보건용, 의료인은 의료용”
용도에 맞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시다!

형태





[참고]
보건용 마스크

종류별 용도

- **특급** 석면, 베릴륨 등 발암성 물질 노출 작업
- **1급** 용접 등 금속흠이 발생하는 작업
- **2급** 일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사용지침

1/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분진작업 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
배기밸브가 있는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 배기밸브를
통해 바이러스 등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3/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작업 내용, 분진 농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용 방진마스크는 일반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방지용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Q3.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 2020년 2월 12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Q4.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며 점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 (약 80 %)은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6 명 중 약 1 명이 중병에 걸리고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치명율이 약 2 %이므로 열, 기침 및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4.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코로나19의 주된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는 통하는 것입니다.
- 무증상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 그러나 코로나19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합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가벼운 기침이 있고 아프지 않은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전파 기간에 대한 연구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업데이트 된 결과를 공유 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발생현황>

Q5. 해외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6.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촉자>

Q7.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8.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9.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10.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11.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2.26. 국회의결)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Q13.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기간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14.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확진자 이동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Q15.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Suspected case) 정의>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20.3.2.기준>

Q16.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신고는 반드시 하시고, 역학조사 및 격리 통지서 발급을 하지 않지만 검사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Q17.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8.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의사의 지도하에 시행)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1. (하기도 검체) 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기침이나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

2.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유전자검사

-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19. 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다른 검사 의뢰건으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0.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21.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22.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는 게 맞나요?

-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검체 송부합니다.
- 다만, 가래가 없으면 객담 유도는 절대 금지하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치료>

Q23.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4.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25.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검역>

Q26. 현재 중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발열카메라 통과 후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Q27. 중국 외 지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행>

Q28.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 대한민국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1.25일 기준), 전 중국지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1.28일 기준)를 발령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9.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63개국(한국포함)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3.1.기준)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기 바랍니다.

Q30.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후베이성 방문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합니다.
- 후베이성외 중국지역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시고,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Q3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으니,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2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Q33.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참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 희석방법 :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Q34.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보건당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35. 공기를 통해 전파가 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그러나 인공호흡기나 그 외 호흡기 관련된 의료적 처치 등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WHO는 다음과 같이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큰 침방울(droplets)이 뿌려질 수 있으나,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떨어집니다.
 - 삽관(intubation)과 같은 의료적 처치과정에서도 작은 침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뿌려집니다.
 - 공기정화시스템에서 메르스바이러스 RNA가 검출 되었던 보고는 있으나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었습니다.
 - 코로나19의 전파방법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출처 : (WHO, Q&A on coronaviruses)

Does the new coronavirus spread through aerosols?

: When people sneeze or cough, they may spray big droplets but the droplets do not stay suspended in the air for long. They fall. Health care procedures like intubation can spray small droplets into the air. Bigger droplets fall quickly. Smaller ones fall less quickly. We know abou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for MERS-CoV and finding RNA in air filtration systems (but not the live virus). However, for the new coronavirus, we still need to see the data and understand how transmission has been assessed.

Q36.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사례도 미국에서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AQs : Am I at risk for COVID-19 from a package or products shipping from China?)

Q37.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WHO, Q&A on coronaviruses : Can I catch 2019-nCoV from my pet?)

Q38. 여행 중에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나요?

-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63개국(한국포함)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3.1..기준)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발생 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다면, 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으세요.
 -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식사 전, 또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비누와 물이 없으면 알코올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휴지로 입과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 씻기를 하세요.
-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발열 또는 기침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세요.
-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Q39. 마스크는 어떤 것을 써야하나요?

-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단,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 감염자는 제외)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 1)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2)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3)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4)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

다. 마스크 사용법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할 것
- 3)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하세요.(‘20.03.10 기준)

-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홈페이지] - [대상별 맞춤정보] -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검색

I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로 진행될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종사자, 시설이용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호 :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및 필요한 조치 의무화

-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 시군구청 내 시설 소관부서-관내 보건소 및 인근 선별진료소
- 시설 조직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 종사자,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 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 시설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붙임 1)

☐ 다음과 같은 직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여행최소화 권고 국가, 국내 유행지역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업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학생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직원 또는 이용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모이는 시술의 경우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시키고, 증상의 발생 여부를 철저히 감독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은 개찰구·손잡이·화장실 등 소독 철저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돌봄 종사자

-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여행력 또는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출근 금지
 -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업무배제 해지 및 출근

4.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검색]

I 개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소독 지침 제공 필요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의료기관의 소독 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 지침 준수

2. 기본방향

- 집단·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공간이나 환자 거주 공간에 대한 신속한 소독 업무 처리절차 안내
-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감염성 물질을 사멸 시키는 소독 방법 제시
- 소독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이 지침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이용한 다중시설 공간(구역) 및 환자 거주공간의 청소와 소독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청소·소독 기준에 따라 시행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지침 내용은 변경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7조 등 **[붙임 1]**

II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1. 일반 원칙

- **(소독 계획)** 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는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필요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계획 수립
 - **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시 업체에서 수행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아야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덮개 또는 고무장화,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
- ☞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2. 소독 전 준비사항

- (준비물품)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장화 등 추가
 - 환경소독제 선택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 환경 또는 물체 표면에 대한 소독제로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필요
 - 인체에 직접 적용(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식품 또는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식품첨가물)은 사용 용도에 적합한 소독제 선택
 -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알코올(70%), 제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 ☞ [붙임 6]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
- ☞ [붙임 7]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환경부 승인제품)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환경부의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붙임 5, 붙임 6)
-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참고)
- ③ 환경부 승인 제품된 제품이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며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사용(1,000ppm)하며 처리시간은 10분 이상 유지필요
- ④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 ⑤ 분무하면 소독제 효과가 미흡하며,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위험 및 흡입 시 위험
-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 ⑦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3. 소독 시 주의사항

-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비누 손 세정→마스크 제거→비누 손 세정→새 마스크 착용→새 장갑 착용

※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①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 표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② 깨끗한 천(또는 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히 닦아냄(소독제를 압축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는 진공청소기 등의 방법은 피할것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감염원이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름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이 실시한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 장비* 및 소독제 준비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 준수, 붙임 5 및 붙임 6)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4% 락스를 1:4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25mL
 -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시설별 소독 장비 종류는 상이하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일회용이 아닌 경우 적절한 소독 시행 후 재사용

- (바닥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바닥 청소 및 소독시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끌어 내릴 것(압축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금지)

-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겂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은 후 마르도록 둡니다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은 알코올(70%) 사용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
- *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가능성이 있음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청소 및 소독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
-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어 금지

※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① 소독제나 물을 적신 일회용 페이퍼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 표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② 깨끗한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히 닦아냄(소독제를 압축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는 진공청소기 등의 방법은 피할 것

- **(화장실 소독)**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세탁 소독)**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 온수 세탁 경우 세제나 소독제*로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
 -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장갑과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직물 세탁에 적절한 소독제 선택 필요(붙임 6, 붙임 7 참조)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 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경우 폐기
- (청소·소독 도구)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는 것이 원칙
 - 한 공간에 사용된 비 다공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 실시
 - 폐기가 어려운 경우 소독제 희석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1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행귀서 소독
 -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
-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 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청소 및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타올)으로 표면을 닦기
-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 (직원 사후 관리)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

- ①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
- ② 세부적인 소독 절차는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및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붙임 4] 참조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붙임 1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시설·다중 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	·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재개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희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
의료기관 (병원)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시행 · 환자 퇴실 후 시행	·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 권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 안내('20.2.11.)
의료기관 (의원급)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다녔던 후 환경관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관리(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20.2.11.)
의료기관 (응급실)	·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 이후 진료 재개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 기관 실무안내('20.2.20.)